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사용료 등에 대해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0.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제1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받은 기관은 사용료가 200만원 이상(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중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1쪽의 ㉔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㉔ 실 납부금액(= ㉓ - ㉔ - ㉕ - ㉖)	원	중소기업 분할 납부 ☐
---------------------------	---	-------------------------------------

별지 제15호서식 2쪽의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연도의 부담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5호서식 3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제27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용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인 경우에만 일시납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3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제28호 본문 중 “㉔ 실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를 “㉔ 실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

업주로서”로 한다.

제4조(「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부담금·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과 또는 징수되는 부담금·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담금의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분할납부 신청금액					
분납 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수탁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도 또는 수탁 기관					

수산자원조성금 분할납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분할납부 신청금액					
분납 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도 또는 시·군·구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② (생략) <u><신 설></u>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사용료가 200만원 이상(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u><신 설></u>	<u>④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 ④ (생략)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u>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u>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 -- <u>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u>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로 한다. <단서 신 설>	제1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 ----- ----- ----- 다만, 영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6조(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